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인원	직급	수행업무
AI디지털전략실 정보보안부장	1명	개방형직위 (일반직 2급)	•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추진 • 공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추진 • 사이버침해 대응 전략 수립 및 추진 • 정보보안 관련 규정 제·개정 관리 • 공단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사업 추진 • 기관 경영평가 및 국정원 평가 대응 •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 총괄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2. 자격요건 (접수마감일 '26. 5. 20. 기준)

구분	지원자격
일반요건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임용기간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계약종료일은 정년퇴직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별지’ 참고) •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사람 - 퇴직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임기제·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이전 경력 중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지원 가능 ** 계약직 형태(개방형, 기간제 등) 근무자는 퇴직 후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기타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구 분	지 원 자 격
경력요건	• (필수) 전산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¹⁾으로 그 중 정보보안 분야²⁾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1) 근무경력 : 정보화 분야 학사석사 학위 보유자는 9년, 박사 학위 보유자는 7년 이상 2) 정보보안 경력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관리,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¹⁾을 소지한 사람 1)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개인정보관리사(CPPG)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6. 5. 20.)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어야 함

3. 근로조건

분야	주요 내용
고용형태	• 개방형직위(일반직2급 대우)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복무 관련 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근 무 지	• 국민연금공단 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 숙소 비제공, 비연고지근무자금 대부 가능
보수수준	• 9,400만원 내외 ※ 경력에 따라 결정(중식비 · 상여금 · 제수당 포함, 단체보험 · 성과급 별도 지급)

4. 우대사항 [접수마감일 '26. 5. 20. 기준]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초 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초 전형	10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전형절차	일정
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 우편 ·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서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6. 5. 6.(수) ~5. 20.(수), 18:00까지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가능 - 직무능력기술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내용 없음, 동일 내용 반복, 특정기호만 표기, 질문과 무관한 내용 등)는 불합격 처리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일 '26. 6. 1.(월)
면접전형	- 면접일자: '26. 6. 8.(월)~6 .9.(화) 중 1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면접장소: 공단 본부(전북 전주) - 면접방법: 개별면접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여 이사장 추천 [추천 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④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자	임용후보자 발표일 '26. 6. 11.(목)
인사검증	- 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구비서류, 신원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7. 13.(월)
최종합격자 임용	2026. 7. 27.(월) (예정)	

※ 공단 내 · 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서류전형 이후 제출)

구분	제출서류 내역	제출대상
학력사항	• (해당자에 한함) 정보화 분야 학사 학위 이상 학위증명서 ※ 각 대학별 증명서 사이트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최신 발급본으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경력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전체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도 동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¹⁾ 또는 직역연금 가입증명서²⁾ 1부 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2)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가입증명서 ※ <u>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직역연금 가입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u>하여 함 ※ 사명 변경, 인수합병 등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소명자료) 제출 필요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경력증명서는 발급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과거 발급분도 인정)	
자격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6. 5. 20.)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 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어야 함	서류전형 합격자
우대사항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6. 5. 20.)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인사검증 관련	• 평판조회 동의서 및 평판조회 의뢰 대상자 명단 ※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임용후보자 2~3명)
신원조사 관련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위면직자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 각 전형단계에서 증빙자료의 보완 또는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 5. 20.(수), 18:00)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각 전형단계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직무능력기술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연락처 포함)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지역연금 증명서 상 일치(기관명, 근무기간)하는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 사전에 해당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후 경력사항 기재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채용 결격 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날짜로 4대 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6. 7. 28.(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63-713-5213, 529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6.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